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金大仁(법정치료법 이사장) 魯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李子賢(정계협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세계부인회 총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석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법률소비자연맹, 지난 1년간 국회(20-2)서 처리된¹⁾ 의원발의법안 총 1,818건 전수조사

지난 1년간 한 건의 법안<대표발의²⁾>도 처리 못 시킨 국회의원이 총 32명이며
제20대 국회 24개월 동안 - 대표발의 법안 0건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지난 1년, 접수된 법안은 6,544건(정부법안 297건 포함), 통과된 법안은 875건
처리된 1,818 법안중, 원안 가결-164건(9.02%), 대안반영³⁾폐기-1,254(68.98%)

현재 적체된 9,934법안을 나쁜 관례<위헌/위법⁴⁾>대로 처리한다면 최소 5년은 걸릴 듯

■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20-2)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순위<폐기처리 법안수는 제외>
<1위 황주홍(민평)의원 49건, 2위 이명수(한국)의원 41건, 3위 김도읍(한국)의원 38건>

■ 선거구별 법안수(대표발의):의원 1인당 전남(11.89건) vs 경북(2.92건)<폐기법안제외>

■ 1년간 가결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 421건 (처리법안중 23.16%)
<처리된 총 1,818법안 중--1,254건은 대안반영폐기, 단순폐기 89건, 철회 53건, 부결 1건>

■ 본회의 원안·수정가결된 의원발의법안 중 73개(17.3%)는 단순 용어순화나 정비법안

1.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20-2)에서 처리된(본회의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대안반영폐기까지) (발의자를 기준으로 의원발의, 위원장발의, 정부발의로 분류됨. 그 중 대다수인 의원발의만을 분석) 의원발의 법률안 1818건(본회의 가결 421건, 대안반영폐기 1,254건, 부결 1건, 단순폐기 89건, 철회 5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건수 산정시에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421건(수정가결 257건, 원안가결 164건)과 대안반영폐기된 1,254건만 통계에 반영하였고, 결과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단순폐기(89건), 철회(53건), 부결(1건)은 통계에서 제외함.

(1)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 283명⁵⁾이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분

1) 여기서 처리란 법안이 본회의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대안반영후 폐기 등으로 다시는 심사/의결하지 않게 종결한 상태.
2) 국회법 제79조 제3항에 의하여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을 기재하는 데 법률안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대표하는 1명이 그 법률의 대표발의자가 되며, 그 법률안의 내용을 알고 작성/제출/추진하는 의원을 말한다.
3)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사실상의 법안폐기로 악용되기도 한다.
4) 우리 국회는 헌법(49조), 국회법(54조/109조)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며, “합의처리” 병폐로 불임국회, 식물국회화 되었다.
5) 문재인 정부 첫해(20-2) 국회의원(288명) 중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5명)을 제외한 수치임.

석을 통하여, 1)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확인하여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이 32명, 2) 품앗이 생색내기용 공동발의⁶⁾ 폭주(처리된 공동발의건수만 의원1인당 66.42개)의 문제(처리되지 않은 법안까지 고려하면 공동발의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여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발의하는지 의문임), 3) 전체 2/3이상의 법안(1,254건)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366건)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는데, 입법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크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283명의 1인당 처리한 평균 발의법률안수 현황》

구분	본회의 가결법안수		대안반영폐기 법안수	계
	대표발의 법안수	공동발의 법안수		
의원1인당 평균	1.40개	16.15개	54.41개	71.96

(2)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없이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법안은 164건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법안은 257건으로 총421건이며, 상임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고 폐기된 법안은 1,254건이었다.

(3) 원안 및 수정가결된 의원발의 법안 421개 중 법률 전부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이나 새로 법을 만드는 제정 법률안은 겨우 16개에 불과(그것도 1개는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법임)하였으며, 용어순화, 사문화된 법안의 정비나 법정형 정비 등 단순 입법안이 73개(17.3%)나 되었다.

2.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단순히 법률안을 제안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하여 국가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 이라고 전제하고,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발의/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적 책무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내용 목차》

- 3. 제20대 국회 첫날 제출한 51개 법률안중 아직도 39개 법률안이 낯잡 중,
2016년 연말까지 제출법안도 70%는 낯잡 중 3
- 4.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20-2) 원안/수정 가결된 법률안 421건 내용 분석 ... 4
- 5. 대안반영 폐기되는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 입법 책임소재가 불명확 /
단순 폐기법안(89건)은 심사보고서에 심사내용 ‘생략’ 등으로 부실기재 7
- 6. 법률연맹 분석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20-2)가 처리한 의원법안 주요통계 ... 14
- 7.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20-2)본회에서 처리된 의원발의법률안 1,675건 19
- 《붙임》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20-2)가 처리한 법률안 발의주체별 분석 현황 19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금애 실장 / 윤소라 부장》

6) 국회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안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야 발의할 수 있는데, 그 찬성한 의원이 법안의 공동발의자가 된다. 대표발의자를 제외한 발의자로 대개는 법안내용을 잘 모른다.

3. 제20대 국회 첫날 숙연한 자세로 제출한 51개 법률안중 아직도 39개 법률안이 낯잡 중이고, 2016년 연말까지 제출법안도 70%는 낯잡 중

제20대 국회 첫 날(2016. 5. 30.) 앞 다투어서 발의하여 첫날 51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39개나 되었다.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이미 의원직 사퇴 등으로 상실된 경우까지 있다.

첫날 처음으로 제출된 박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일경제자유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6. 09. 06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제20대 국회 개원첫날 제출된 의원 법안 중 아직도 계류(잠자고)되어 있는 법안》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2000001	통일경제자유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 정 의원 등 17인
200000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배덕광 의원 등 14인
20000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1인
20000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1인
200000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20000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20000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200000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1인
20000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200001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20000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20000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20000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의원 등 12인
20000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등 10인
2000018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명재 의원 등 14인
20000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등 14인
2000021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 의원 등 13인
20000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 의원 등 10인
200002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 의원 등 11인
2000024	청년기본법안	신보라 의원 등 122인
2000025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 의원 등 122인
2000026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 의원 등 125인
200002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이명수 의원 등 122인
20000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등 122인
20000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등 122인
2000032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의원 등 122인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2000033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김광림 의원 등 14인
20000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의원 등 10인
20000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등 12인
20000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등 12인
200003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2인
20000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등 11인
20000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의원 등 11인
20000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의원 등 10인
20000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2인
200004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의원 등 10인
20000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등 12인
20000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11인
20000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0인

그나마 51건중 처리된 12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된 법안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9개는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반영(?)후 폐기되었다.

《20대 국회 첫날(24개월전) 접수된 51건중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결과
20000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	2016.05.30	2017.03.30	수정가결
20000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2인)	2016.05.30	2017.03.30	수정가결
20000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2016.05.30	2016.11.17	수정가결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6년 5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4,258개인데, 이중 68.13%에 해당하는 2,901건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생매장되어 계류 중에 있다.

4. 문재인 정부 첫해(20-2)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가결된 421건 내용 분석

(1) 제정 및 전부개정 법률안은 고작 16개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법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한 전부개정법률과 새로 만들어진 제정법은 모두 16개였다.

다만,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한 개 조항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정법안으로 평가하기는 애매한 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가결된 제정법안과 전부개정 법률안 현황》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의원수)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011106	담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홍의원 등 19인)	2017.12.28	2018.05.28	수정가결
201012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의원 등 24인)	2017.11.10	2018.02.28	수정가결
200885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8.29	2017.12.29	수정가결
20086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의원 등 17인)	2017.08.24	2017.12.29	수정가결
200838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8.03	2018.03.30	수정가결
200738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의원 등 26인)	2017.06.14	2018.02.28	수정가결
2006436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03.28	2017.12.08	수정가결
2003074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의원 등 12인)	2016.10.31	2017.09.28	수정가결
2002494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1인)	2016.09.27	2017.11.09	수정가결
200072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2016.07.07	2018.05.28	수정가결
2001619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41인)	2016.08.17	2017.09.28	수정가결
200500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의원 등 32인)	2017.01.06	2017.11.24	수정가결
200447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인)	2016.12.19	2017.11.24	수정가결
200358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의의원 등 11인)	2016.11.15	2017.12.01	수정가결
200905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20인)	2017.09.04	2017.12.29	수정가결
2003535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의원 등 22인)	2016.11.14	2018.02.28	수정가결

(2) 단순 입법이라고 평가된 사례

의원발의 법안 중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된 421건의 법률안을 분석해 본 결과 법률안의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단순 입법안은 전체 가결 법률안의 17.33%인 73건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등 단순한 단순 개정조차 상임위와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므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 이미 사문화된 법안의 폐지 등 단순 입법에 관한 것은 논의하여 간단한 절차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 입법이었다고 평가한 법률안 현황》

구 분	개정법률안수
해당법이 아닌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변경으로 인한 단순변경(또는삭제)	27
법안내용의 개정이 아닌 단어순화인 경우 예)불요존국유림->준보전국유림	10
국가인권위 권고 및 국회사무처법제예규에 따라 1년에 1천만원씩 벌금이 늘어남. 변경 예)처벌내용이 3년이하의 징역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2007.12.21.)되어 개별법률에 과태료처분절차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8
사문화된 법률이나 이미 폐기된 법안의 폐지	3
계	73

《사례 예시》

1) 해당법이 아닌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변경으로 인한 단순 변경 또는 삭제

-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법률을 정비함.
- ②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관련 법률을 정비함.
- 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일원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관련규정을 삭제 함.
- ④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1년 민법이 개정되어(2013년 시행)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법안 내용의 개정이 아닌 단어순화인 경우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함.
-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일본식 한자어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개정함.
- ③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법률안의 용어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국가인권위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1년에 1천만원씩 벌금이 나도록 변경

- 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26조의 벌금액을 징역 1년 기준 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제49조의 벌금액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③ 한국공항공사법(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제20조의 벌금액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2007.12.21)되어 개별법률에 과태료처분절차 삭제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함.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함.

③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함.

5) 사문화된 법률이나 이미 폐기된 법안의 폐지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법률이 남아 있어 폐지함.

②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참의원의원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부칙에 따라 1960년 6월 23일 폐지되었으나 법률이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함.

5. 대안반영 폐기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 : 입법 책임소재가 불명확

단순 폐기법안(89건)은 폐기이유도 불분명

[용어예] 1) **처리된 법안**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대안반영 폐기법안) 등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어 처리된 법률안(본래 처리된 법률안에는 폐기, 철회까지 포함되지만 본 조사에서는 폐기 및 철회된 법률안은 포함시키지 않음.)

2) **가결**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원안가결** :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경우, **수정가결** :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

3) **대안반영**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폐기한 법률안.

(1) 의원발의 법안 1,254개가 대안반영폐기되어 위원장 대안 366개로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여 법률안 내용 그대로 가결시키는 원안가결과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가결하는 수정가결 대신 여러 개의 법률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한 개 법률안으로 만들어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 첫째 위원장 대안은 366건이었고, 이 중 365건은 원안가결되었고, 1건만 수정가결되었다.

위원장 대안을 만들 때, 폐기되는 법안수를 살펴본 바, 10건 이상이 폐기된 법률안은 총 17개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무려 **83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조정하여 만들었다**. 이처럼 조세관련 법안의 대안폐기가 특히 많았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럼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도 의원의 법안발의가 많아져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만들기 위해 동일취지나 비슷한 내용의 22개의 법률안이 폐기되었다.

맹견(猛犬)이 사람을 살상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맹견관련 규정과 동물복지관련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무려 12건이나 발의되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첫째(20-2) 상임위 대안 중 10건 이상의 대안반영폐기법안이 있는 경우》

의안번호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수
2010556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부위원장)	2017.12.01	2017.12.01	83
2010702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17.12.08	2017.12.08	25
2008110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부위원장)	2017.07.20	2017.07.20	22
2012199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18.02.28	2018.02.28	21
2012226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18.02.28	2018.02.28	20
200969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17.09.27	2017.09.28	17
2010553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부위원장)	2017.12.01	2017.12.01	15
2012207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18.02.28	2018.02-28	12
2009685	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17.09.27	2017.09.28	11
20137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18.05.28	2018.05.28	10
2012202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18.02.28	2018.02.28	10
2012185	공무원연금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18.02.28	2018.02.28	10
201095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17.12.21	2017.12.29	10
2010939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17.12.21	2017.12.29	10
2010938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17.12.21	2017.12.29	10
2010538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17.11.30	2017.12.01	10
201052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17.11.30	2017.12.01	10

【대안반영 폐기법안(최저임금법)의 예】

2018. 5. 28.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6개 관련법안〔(20097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발의), (20108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발의), (20123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발의), (20117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의원 등 15인발의), (20120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의원 등 10인발의), (201304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발의)〕의 내용을 조정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었고, 그 법안심사의 경과과정이 법률안(대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음.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2017년 9월 2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2017.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 나. 2017년 12월 13일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8.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 다.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5일 김삼화의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2월 22일 신보라의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3월 7일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8년 4월 13일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바로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 나.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2)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대안반영이라고 한 경우

상임위원회에 소위에서는 상임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의원발의 법안을 폐기시키기도 하는데,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대안반영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관련 법률안 10개를 대안반영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중 6개는 전혀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4개의 법률안만 대안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공포번호 15348호) 시행 2018.7.1. [법률 제15348호, 2018.1.16., 일부개정]

본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110조제1항 중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를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을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대안반영폐기 여부

(1) 박광온 의원 등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930)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안 제41조제4항 단서 신설)’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4항은 개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윤소하 의원 등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41)은 ‘제51조의2(아동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되지 않음. 그러므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설훈 의원 등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676)은 ‘제44조 제2항을 신설하여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단이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제44조의 제2항은 신설되지 않음. 그러므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서영교 의원 등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6616)은 ‘제51조의2를 신설하여 공단이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제51조의2가 신설되지 않아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5) 유승희 의원 등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6636)은 ‘제41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단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이었으나, 제41조 제5항은 신설되지 않아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6) 정춘숙 의원 등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7372)은 ‘제44조 제2항을 신설하여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제44조에 개정안의 취지대로 개정된 사항이 없어 본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7) 실제 대안반영된 법률안들

- 같이 대안반영폐기된 법률안 중 다음의 법률안들은 실제로 대안반영된 법률안들임.

1) [200867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발의) -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됨.

- 2) [20092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발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반영됨.
- 3) [20084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5인발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반영됨.
- 4) [200958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5인발의) - 임의계속사업자의 기준과 보험료산정기준으로 반영됨.

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내용

- 상기 법안을 심사한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인재근 소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상당 부분 입법취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안이 만일에 반영이 되면 거기 같이 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의원실과 협의가 됐습니다.(회의록 17쪽)”라고 하고 상기 안전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됨.
- 총10건의 대안반영폐기법률안 중 실제로 대안에 반영된 것은 4건에 불과함.

(3) 상임위원회의 폐기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⁷⁾ 부실 : 국회법 제66조 위반

심사내용 파악이 어려움 (한노위 18개 폐기법안의 심사내용 “생략”)

문재인 정부 첫해(20-2)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건수는 모두 89건이었다. 이 폐기된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확인해보면, 위원회별로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하나,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소위원회 심사내용이 생략되어 전혀 알 수 없거나,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아래는 폐기된 법안이 있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예시해 본 것이다. 관련 법안이 왜 폐기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단순히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는 ①위원회는 안전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최소한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면 그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불부의(폐기) 이유는 철저하게 기록해서 남겨야 할 것이다.

《폐기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현황(위원회별 예시)》

7)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전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위원회	폐기법 안수	심사보고서의 내용 중 소위 심사내용 예시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법제사법	1	20077 77	외국법자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최연혜의 원 등 11인)	2017. 07.04	2017. 12.08	폐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 금태섭 의원)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6128호)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정무	13	20094 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 인)	2017. 09.15	2018. 05.23	폐기 (소위원장 : 이학영의원) 2018.1.17.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안의 취 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개정안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다만, 개정 내용을 법안에서 규율할 것인지 여 부는 국회가 선택할 문제이며, 이번 시행 령 개정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 는 의견이 있었음.
기획재정	17	20101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 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2017. 11.10	2018. 02.09	폐기 “소위원회 심사내용 : 생략” 으로 표기
외교통일	3	20101 24	국립외교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2017. 11.10	2017. 12.16	폐기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이용호 의원 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의결함.
국방	8	20052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 01.23	2017. 09.08	폐기 (소위원장 경대수) 군인의 인사를 관리할 때 학력의 기재는 필요하고, 각 군은 진급 을 결정함에 있어서 출신학교 등이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급심사 자료에는 학력 등을 기재하고 있지 않음 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하였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18	20098 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 09.29	2017.1 2.16	폐기 (소위원장 이만희)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함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2	20079 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의원 등 14인)	2017. 07.14	2018. 02.05	폐기 (소위원장 : 손금주위원) 해당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동 개정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환경노동	18	20072 9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의 원 등 10인)	2017. 06.09	2017. 11.30	폐기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으로 표시
국토교통	9	20087 7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2017. 08.28	2018. 02.05	폐기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욱) 임시특례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재 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취지, 재건축시 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참고 사례로, 문재인 정부 첫해(20-2)년도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또 상임

위원회 대안으로도 반영되지 않고 단순폐기된 법안수는 13건의 소득세법개정법률안 등 89건이었다. 6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단순폐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첫째(20-2) 단순폐기된 법안의 대표발의의원 현황》

단순폐기법안수	10건	4건	3건	2건	1건	계
의원수 (대표발의 의원)	1 (황주홍 의원)	1 (김종민 의원)	1 (노회찬 의원)	10 (생략)	52 (생략)	65 (생략)

(4) 폐기된 법안에 대한 폐기이유는 대표발의 의원도 모르고 있었음

폐기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노동위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내용을 알 수 없었다(전문위원의 의견을 원용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불부의(폐기) 이유를 알 수 있었으나, 정무위원회의 경우에는 본회의 불부의 이유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폐기된 법안이 있는 여러 의원실에 문의해 본 결과,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폐기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회의를 하여 본회의 불부의(폐기)하기로 결정했다을 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폐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보고서 분석내역》

의안번호	폐기법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결과	심사보고서의 심사내용
201029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으로 표시
201028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으로 표시
201029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으로 표시
201029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으로 표시
201029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으로 표시
2010356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7.11.23	2018.03.17	폐기	“심사내용 생략”으로 표시
201029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으로 표시
200809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19	2017.12.16	폐기	(소위원장 : 김한표위원) 현행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법 취지 반영하고 이 법은 폐기하도록 함
200356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14	2017.09.08	폐기	(소위원장 경대수) 법인의 합병에서의 토지매수청구권 인정은

의안번호	폐기법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결과	심사보고서의 심사내용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벗어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2005101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일부개정법률안	2017.01.13	2017.11.08	폐기	(소위원장 이만희) 지자체도 방역교육 및 방역조치의무의 주체이고 타 입법례에서도 비용종류에 따라 부담비율을 유연하게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6.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문재인 정부 첫해(20-2) 통과된 의원법안 주요통계

(1) 본회의에 처리된 법안의 대표발의건수 '0건' 의원 '32명'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1,675건(1차년도 862건보다 1.94배 증가)을 분석한 결과, 처리된 법안 중 대표발의 법률안이 0건인 국회의원이 무려 32명(1차년도 73명)이나 되었다.

초선의 경우에는 126명의 의원 중 8명의 의원이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선의원 32명중 9명이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5선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6명의 의원 중 7명인 43.75%가 2차년도에 처리된 대표발의 법률안이 한 건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본회의 처리된 대표발의법안 0건 의원 현황》

5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대표발의법안수 0건 의원수	8	3	5	9	7	32
기준 의원수	126	65	44	32	16	283
비율	6.35%	4.62%	11.36%	28.13%	43.75%	11.31%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법안건수 0건 의원들은 대부분 여·야당의 중진의원으로 주요당직을 맡거나 국회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으나, **초선과 재선의원도 11명이나 되었다.**

32명 국회의원 중에도 대부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5건(권칠승 의원)까지 대표발의를 했다. 2차년도에 단순폐기나 철회된 대표법안이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본회의 가결되거나 대안반영 폐기법안이 없다.

그런데 유독 김무성 의원은 2년동안 1건도 대표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 처리될 대표법률안이 아예 없었다. 제20대 국회 현직 의원 중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 0건 국회의원(32명)》

의원명	당선헌수	선거구	정당	성별
강석호	3선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자유한국당	남
강효상	초선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남
권철승	초선	경기도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남
김두관	초선	경기도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김무성	6선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자유한국당	남
김병기	초선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김석기	초선	경상북도 경주시	자유한국당	남
김종훈	초선	울산광역시 동구	민중당	남
김한정	초선	경기도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박병석	5선	대전광역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박주선	4선	광주광역시동구남구를	바른미래당	남
서청원	8선	경기도 화성시갑	자유한국당	남
송영길	4선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더불어민주당	남
우상호	3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원유철	5선	경기도 평택시갑	자유한국당	남
유기준	4선	부산광역시 서구동구	자유한국당	남
유승민	4선	대구광역시 동구를	바른미래당	남
이군현	4선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자유한국당	남
이수혁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남
이은재	재선	서울특별시 강남구병	자유한국당	여
이인영	3선	서울특별시 구로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이장우	재선	대전광역시 동구	자유한국당	남
이혜훈	3선	서울특별시 서초구갑	바른미래당	여
정세균	6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소속	남
정양석	재선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자유한국당	남
정진석	4선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자유한국당	남
조원진	3선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대한애국당	남
진영	4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더불어민주당	남
천정배	6선	광주광역시 서구를	민주평화당	남
최경환	4선	경상북도 경산시	자유한국당	남
추미애	5선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더불어민주당	여
홍문종	4선	경기도 의정부시를	자유한국당	남

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대표발의 법안수가 49건이었으며, 그 다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개,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5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법률안 건수 상위 국회의원》

의원명	당선헌수	선거구	정당	통과된 대표법안수
황주홍	재선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민주평화당	49
이명수	3선	충청남도 아산시갑	자유한국당	41
김도읍	재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38
이찬열	3선	경기도 수원시갑	바른미래당	36
박광온	재선	경기도 수원시정	더불어민주당	35
박흥근	재선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29
남인순	재선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22
최도자	초선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22
김중로	초선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21
김삼화	초선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20
박정	초선	경기도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20
주승용	4선	전라남도 여수시을	바른미래당	20

(2) 당선횟수별 처리된 발의법안건수는 재선의원이 초선의원보다 많아

당선횟수별 처리된 대표발의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문재인 정부 첫해(20-2)에 의원 1인당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수는 평균 5.54건이었다. 재선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는 8.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초선의원이 5.48건이었으며, 3위는 3선의원으로 5.05건이었다. 4선의원은 3.28건, 5선의원이 1.63건으로 가장 저조하였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수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의원수	126	65	44	32	16	283
처리된 평균 대표발의법안수	5.48	8.09	5.05	3.28	1.63	5.54

(3) 처리된 대표발의건수 : 더불어민주당(6.01건) > 자유한국당(4.58건)

공동발의건수 : 더불어민주당(81.03건) > 자유한국당(49.13건)

정당별 처리된 법안의 대표발의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정당별로 민주평화당 소속의원의 대표발의법안수가 7.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7.40건, 자유한국당 4.58건 순이었다.

정당별 본회의 통과법률안의 공동발의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의원 평균은 66.42건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평화당 소속의원이 가장 많은 102.57건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81.03건이었다. 자유한국당은 49.13건이었고, 바른미래당은 70.60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정당별 평균 처리된 발의 법안건수 현황》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기타	평균/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수 평균	6.01	4.58	7.40	7.71	3.23	5.54
처리된 공동발의 법안수 평균	81.03	49.13	70.60	102.57	41.08	66.42
통과된 총 법안수 평균	87.04	53.72	78.00	110.29	44.31	71.96

참고로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수를 살펴보면, 전체 의원당 평균은 54.41건이며, 민주평화당 소속의원들이 발의하여 대안반영폐기된 평균 법안수는 81.57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여 대안반영 폐기된 평균 법안수 66.40건이었고,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하여 폐기된 평균 법안수는 39.65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정당별 평균 대안반영 폐기법안건수 현황》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기타	평균/계
평균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 수	66.40	39.65	59.63	81.57	37.23	54.41

(4) 지역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 수— 전남(11.89건) 1위

지역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전라남도 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11.8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충남 출신 의원의 대표발의건수는 7.33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반면, 경북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2.92건에 불과하여, 세종시 1건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서울 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건수는 평균을 조금 넘는 5.67건이었다.

공동발의건수 역시 전라남도 출신의원이 평균 96.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북이 95.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63.11건으로 공동발의 건수는 평균 66.42건에 미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선거구별 본회의 처리된 발의법안건수 현황》

구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수 평균	처리된 공동발의 법안수 평균	처리된 전체발의 법안수 평균
서울특별시	5.67	63.11	68.78
부산광역시	5.94	58.94	64.88
대구광역시	4	50.18	54.18

구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수 평균	처리된 공동발의 법안수 평균	처리된 전체발의 법안수 평균
인천광역시	5.08	60.67	65.75
광주광역시	3.29	63.29	66.57
대전광역시	3.14	32.29	35.43
울산광역시	3	56	59
세종특별자치시	1	21	22
경기도	5.78	77.32	83.1
강원도	4	38.88	42.88
충청북도	4.83	66.5	71.33
충청남도	7.33	72.33	79.67
전라북도	5.1	95.4	100.5
전라남도	11.89	96.22	108.11
경상북도	2.92	50.58	53.5
경상남도	4.13	47.53	51.67
제주특별자치도	6	95	101
평균	5.54	66.42	71.96

(5) 처리된 법안의 공동발의건수는 여전히 높아 100건 이상 57명

1인당 평균 66.42건

문재인 정부 첫해(20-2)동안 처리된 법안의 공동발의 건수를 분석해 보면, 100건 이상 공동발의한 의원은 57명이나 되었으며, 처리된 법안의 공동발의건수가 평균 66.42건이나 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선수별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건수 현황》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의원수
20개 미만	3	6	7	8	4	28
20~29	7	5	9	3	4	28
30~39	15	8	8	6	3	40
40~49	11	8	2	5	0	26
50~59	19	6	6	2	3	36
60~69	14	7	2	4	1	28
70~79	5	6	0	0	0	11
80~89	9	3	0	1	1	14
90~99	10	3	2	0	0	15
100개이상	33	13	8	3	0	57
의원수 계	126	65	44	32	16	283
평균	77.14	71.38	56.43	44.03	34	66.42

**7. 문재인 정부 첫해(20-2) 본회의 처리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1,675건이고,
계류되어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은 9,450건**

국회에 접수되어 아직 계류 중인 법률안이 무려 9,782건(2018. 6. 25. 현재)이나 되며, 이중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법안이 9,450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0대 국회 2차년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에 대해 정량적인 점수를 주는 한편,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점수배점에 차등을 두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법안을 입안하여 법률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붙임》

문재인 정부 첫해(20-2) 처리된 법률안 발의주체별 분석 현황

제 351 회 ~ 제 360 회 본회의

발의주체	계	가결법안		대안 반영
		원안가결	수정가결	
의원	1,675	164	257	1,254
위원장	387	386	1	
정부	167	29	38	100
총계	2,229	579	296	1,354

구분	발의자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대안반 영폐기	부결	단순 폐기	철회	
2차 년도	의원	5,860	1,818	421	1,254	1	89	53	4,042
	위원장	387	387	387	0	0	0	0	0
	정부	297	167	67	100	0	0	0	130
계		6,544	2,372	875	1,354	1	89	53	4,172

출처 : 국회사무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